

등록회원 에 관한 지침

제정 2021. 3. 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등록회원 에 관한 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 제17조에 의거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규정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은 대한간호협회 회원 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의 운영) ① 협회는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의 약관을 정하여 회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규정에서 정한 회비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의 이용 기간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협회는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면허자 신고) ① 규정 제4조에 따라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면허정보등록 화면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면허 정보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면허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허자 신고를 한 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원기본사항 변경신고 방법) 회원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회원기본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협회 및 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성명이 변경된 경우: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(FAX)으로 면허증 사본 제출
2.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, 전자우편주소, 근무처, 거주지 등이 변경된 경우: 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정보수정

제7조(평생회원증 재발급 신청 방법)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생회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(2021. 3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. 3. 8.부터 시행한다.

